

	<h1>보도자료</h1>	2016. 4. 21(목)	
		작성 · 문의	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(☎ 044-200-2056) 국조실 해양교통정책과장 송기진 (☎ 044-200-2239) 국조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찬희 (☎ 044-200-2325) 국토부 운항안전과장 강승호 (☎ 044-201-4259)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(☎ 02-2100-6291)
* 엠바고 : 4.21(목) 10시30분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국토부, 여가부			

저비용항공사, 안전만큼은 'First Class' 수준으로 높인다

-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「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」· 「청소년보호 종합대책」 확정
-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결과 노선 배분시 반영, 운항규모 증가 단계별 종합 안전심사
- 신·변종 유해매체물 적극 차단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28개 중점과제 추진

□ 정부는 4.21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, 「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」, 「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」을 논의·확정하였다.

* 참석자 : 교육부·법무부·행자부·복지부·여가부·국토부장관, 국조실장, 문체부·고용부차관, 경찰청장 등

1.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

□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*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「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」을 마련하였다.

* 제주항공 객실여압장치 이상으로 비정상운항(15.12) /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(16.1)

< 저비용항공사(Low Cost Carrier, LCC) >

- (개념) 안전 관련비용(인력·장비·시설 등) 이외에 다른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모델
- (운영 현황) '05년 최초 취항 이래 현재 6개 LCC* 운영중
 - * 제주항공(23대), 진에어(20대), 에어부산(14대), 이스타(15대), 티웨이(13대), 에어인천(2대)
- (운항 규모) 여객운송실적에 있어 연평균 21%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'15년에 급격히 성장 (24%, 최근 5년내 최대치)
 - * '15년 LCC의 국내선 여객수송량이 대형사를 추월(55%)하였고, 국제선도 15% 차지

1.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결과

□ 먼저,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,

《 특별점검 개요 》

- ▶ (점검기간) '16.1.11~2.26, 총 6주(항공사별 2주씩 점검)
- ▶ (점검단) 국토부 직원 25명(항공안전감독관 14명)
- ▶ (점검대상) 저비용항공사 6개사 및 주요공항 5개소(인천·김포·김해·제주 등)
- ▶ (점검중점)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현장의 기본규정·절차 준수실태 등

○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·기능 확충, 전문인력 및 장비·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,

* 그간 LCC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사고는 꾸준히 발생(연 1건)

** 항공사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'항공안전장애'가 '15년 1/4분기부터 지속 증가 중이며,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전년대비 '15년 94% 증가(전체 30% 증가)

○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*되는 경우가 많고,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·규정의 이행이 미흡한 사례**도 확인되었다.

* 예) 조종사 비행자료분석 부실 → 조종사 재교육 등 체계적인 사후조치 미흡
항공기 정비·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위탁업체에 의존 → 형식적인 교육 실시

** 예) 반복발생 결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, 정비이월 후 필수점검 미수행 등

-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,
 -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「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」을 마련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2.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

<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>

-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.
 - 현재는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前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(운항증명)하고,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
 -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(예 : 20대, 50대)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('16.4~, 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)이다.
 - * 운항증명(AOC : Air Operator Certificate) :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·인력·시설·장비·규정 등을 갖추었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증명하는 제도
- 또한,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*하고 있는 만큼
 - * 최근 5년간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율(연평균) : 대형사(4%), 저비용항공사(26%)
 -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·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.
 - * (인력) 항공기 1대당 기장·부기장 각 6명, 정비사(운항정비) 12명 보유 권고 (장비)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, 예비 엔진·부품 보유 확대 유도

<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>

- 저비용항공사의 중(重)정비(엔진·기체 등)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·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·개편토록 하는 한편,
 -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*하고, 전기·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- * 확인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(최근 2년내 6개월 이상) 추가('17.3)
- 아울러, 안전장애·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, 기본절차 오(誤)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·감독하여 개선해 나간다.

<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>

-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하여,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·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.
 -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「비행자료분석 매뉴얼」을 제공하고,
 -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 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.
- 또한,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·시설(운항·정비·객실분야)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.

*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의 모의비행장치 도입 유도

<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>

□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,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*하고,

* 항공교통서비스 평가(국토부, '13~)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 공개

○ 운항 노선 심사시에도 적극 반영*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.

* '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'(국토부령) 개정 추진('16.4~)

□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·시행하고,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간다.

○ 특히,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하여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,

○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(컨설팅·워크숍·간담회) 등을 통해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【참고1】 저비용항공사(LCC) 안전강화 대책 전·후 비교

2.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('16~'18)

- 정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(만 19세 미만, 청소년 보호법)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
 - 스마트폰·SNS를 통해 유통되는 신종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어 「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*」을 마련하였다.
- * ‘청소년 보호법’ 제33조에 근거한 3개년 계획
- 그동안 정부는 「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('13~'15)」을 추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으나,

< 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주요 성과 >

- (유해 매체물) 청소년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SW 설치 의무화('14.9)
- (유해약물) 주류·담배 판매업소 ‘청소년 대상 판매금지’ 표시 부착 의무화('14.3)
- (유해 업소) 사행성 유발업소(경륜·경정 장외발매소) 청소년출입 금지('14.4)
- (유해 행위) 13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성폭력 범죄 확대('13.6)
- (근로 보호)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·단속 강화,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

- 인터넷·스마트폰 등에 기반한 청소년 유해환경이 빠르게 변화*하고 있는 만큼 2차 종합대책에서는 ‘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’이라는 목표 아래 ‘현장의 실천’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* 예) 최근 2년간 케이블TV·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율이 두배 이상 급증(여가부, '14)

- 이번에 마련한 「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

- 신·변종 유해 매체물, 유해 약물, 유해 업소 등에 대한 **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**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.
- (유해 매체물)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,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(여가부·방통위(방심위), '16.4~)을 실시하고,
 - 인터넷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·음란 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(여가부·방통위(방심위), '16.4~) 한다.
 -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심의기구*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(정례협의체 운영, '16.4~)한다.
 - *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간행물윤리위원회, 게임물관리위원회, 영상물등급위원회, 청소년보호위원회 등
- (유해 약물)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,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(복지부·여가부, '16.4~)해 나간다.
- (유해 업소)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·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*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간다.
 - *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후 즉시 여가부 고시 제·개정 추진
 - ** 현재 키스방·유리방·성인 PC방 등이 지정
-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(편의점 등)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(고용부·여가부·지자체, '16.4~)하고,
 - 특히, 특수고용형태*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(고용부·여가부, '17) 한다.
 - *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

2.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

-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,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 - (유해 행위)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'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'를 확대·운영('16, 150개 → '18, 450개)하는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시키기 위한 특성학교* 운영을 활성화하고,
 - * 현재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(6개), 정보윤리학교(160개),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(150개) 지정·운영중(미래부·교육부, '16)
 - 청소년 스스로 폭력·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(교육부·여가부, '16.4~)해 나간다.
 - * '명예 경찰 소년단'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 육성 강화,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등
 - (유해 업소) 청소년출입금지·제한업소*의 사업주단체·지자체 등과 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**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해당 업계의 자발적인 규제 이행 노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.
 - * 청소년출입금지업소(청소년보호법) : 사행행위영업(복권발행·경품 등), 단란주점, 비디오물 감상실업,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, 무도장업 등
- 청소년들이 근로권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·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.
 - 이를 위해,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'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'을 일반고와 중학교,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(고용부·여가부, '16.하) 해 나가고,
 - 현행 교육과정*에 청소년의 근로권의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(교육부, '18~)할 계획이다.
 - * △중학교 '사회' △고등학교 '통합사회'·'정치와 법' △특성화고 '성공적인 직업생활'

3.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

- 매체·약물 등에 중독·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.
 - (유해 매체물)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·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내 '사이버 안심존*'을 확대·운영**한다.
 - *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+ 스마트폰 과다사용 상담치료 병행
 - ** ('15) 331개 학교 → ('16) 531개 학교
 -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*을 학교밖 청소년으로 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.
 - * ('15) 초4, 중1, 고1 → ('16) 초4, 중1, 고1, 학교밖 청소년
 - (유해 약물)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활성화하여 치료 재활을 확대해 나간다.
 - * '15년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: 128명(대마 50, 마약 0, 향정신성류 78)
-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.
 -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주는 '현장도우미' 사업을 내실화(여가부)하고,
 -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'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*(가칭)를 구성·운영('16.하)하여 유관 기관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.
 - * 지자체, 고용지청, 교육청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으로 구성

※ 【참고2】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추진체계

구분	종전	⇒	개선
<p>자체 안전 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내실있는 자체 안전관리 미흡 ● 최고경영자(CEO) 안전 인식·관심 부족 ● 운항규모에 걸맞은 안전투자 부족 ● 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정부의 부분적 안전운항체계 심사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체 안전관리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관리조직의 기능·위상 강화(안전관리 책임자 직급 부장급→임원급 상향 등) ● CEO의 ‘안전위원회’ 의무적 참석 및 안전성과·현안 직접 관리 유도 ● 전문인력(조종사·정비사), 예비엔진·부품, 정비시설 적정수준 보유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조종사) 항공기 1대당 기장·부기장 각 6명, (정비사) 항공기 1대당 정비사(운항정비) 12명 ●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 도달 시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심사 추진
<p>항공기 정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항공사의 자체 정비능력 부족 ● 자회사형 LCC의 정비수행체계 3원화 (자사·모기업·계열사)로 업무관리 곤란 ● 항공사의 해외위탁정비 품질관리 능력 취약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체 정비체계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비품질심사·관리의 조직·기능 확대 - 확인정비사 자격요건·전문교육 강화 ● 자사 중심으로 정비수행체계 개편 ● 정부의 해외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 및 항공사의 해외공항 주재정비사 확대
<p>조종사 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개인별 체계적 기량 관리 미흡 ● 최소 법정요건 충족 위주 형식적 훈련 ● 훈련장비·교관·시설 부족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비행자료분석(FOQA) 매뉴얼 제공 ● 실질적 기량향상 훈련 위주로 항공사 훈련프로그램 보완 및 정부심사 강화 ●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비행훈련 장비, 전문교관·시설 확보 유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대당 FTD 1대 또는 20대당 SIM 도입
<p>안전 문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장의 기본절차 미준수 및 영업 위주의 무리한 운항 ● 자체 안전관리 미흡·안전투자 부족 ● 정부 안전감독관 인력 부족 ● 선진 감독기법 습득 기회 부족 ● 안전 관련 현장소통 부족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장 불시감독 상시적 확대·시행 및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처벌 ● 항공사 안전도 평가 및 운수권 배분 활용 ● 정부 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● 외국인 감독관 채용 및 해외 전문교육 참가기회 확대 ●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 활성화 (컨설팅·워크숍·간담회 등)

참고 2

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체계

비 전

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

목표

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

정책 유형	영역	중점과제(28개)
① 모니터링·제도개선	매체물	· 신·변종 유해매체 모니터링 확대 · 유해매체물 제작·유통(배포)·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
	유해약물	· 유해약물 신규 유통판매 경로(인터넷 직거래 등)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· 유해약물 사업관련자,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·단속 강화
	유해업소	· 신·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계도·단속·처벌 강화 ·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
	유해행위	· 친족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강화 · 스마트폰 채팅앱 등 신종경로를 통한 성매매성폭력 단속적발 강화
	근로보호	·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· 청소년고용업소의 자율적 근로권익보호 활성화
② 대응능력 함양·인식 제고	매체물	· 생애주기별 유해정보·매체 대응 역량 증진교육 체계화 · 매체이용 윤리교육 및 자치활동 활성화
	유해약물	· 유해약물의 청소년 대상 노출 및 확산 차단 · 유해약물 예방교육 확대 강화
	유해업소	·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자율규제 활성화 · 중앙·지자체·경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연계·협력 강화
	유해행위	· 폭력 예방 교육내용·방법의 질적 제고 · 폭력가해·피해청소년과 그 부모(보호자) 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
	근로보호	·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방식의 질적 제고 ·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
③ 피해구제·사후관리	매체물	·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치유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· 사이버도박 등 중독 청소년 발굴·지원체계 강화
	유해약물	· 청소년의 유해약물 중독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강화 · 공공·민간 전문기관의 유해약물 치료재활 기능 및 역할 확대
	유해행위	·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· 폭력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강화
	근로보호	·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 ·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

추진 체계

- ❖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·각급 학교·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
- ❖ 유해환경 개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